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26
----------	------

발의년월일 : 2020. 5. 1.

발 의 자 : 노세영, 문희성, 강혜경,
이명녀, 박경흠, 박채연,
김기환

1. 제안이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 시기도 외부강의등을 마친 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의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함(안 제28조제2항)
- 나. 신고 변경사항은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5일내 보완(안 제28조제3항)
- 다.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강의등을 제한(안 제28조제5항)
- 라.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자문 의무사항 변경(안 제32조제3항)
- 마. 조문 정비(안 제34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36조제2호, 안 제40조제1항제2호, 안 제41조제4항)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사항 : 해당 없음
- 나. 규제사무심사 : 해당 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분석 : 해당 없음
- 라. 조례안 예고 : 2020. 4. 24. ~ 4. 29.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신고하여야”를 “신고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를 “그 의원의”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제35조”를 “제36조”로, “자문하여야 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5조”를 “제36조”로 한다.

제36조제2호 중 “제18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제13조제2호”를 “제19조제2호”로 한다.

제41조제4항 중 “제39조”를 “제40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략)</p> <p>② 의원은 <u>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u>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u>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u></p> <p>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u>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u></p> <p>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p>	<p>제2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u> ----- ----- <u>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이내에</u> ----- ----- <u>신고해야</u> -----.</p> <p>③ ----- ----- ----- ----- ----- <u>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u> ----- ----- -----</p> <p>-.</p> <p><삭 제></p> <p>⑤ ----- ----- -----</p>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 ⑧ (생략)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④ 의장과 제35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략)

제36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생략)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 그 의원의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34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제36조 -----
----- 자문할 수
있다.

④ ----- 제36조 -----

-----.

⑤ (현행과 같음)

제36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

1. (현행과 같음)
2. 제27조제1항 -----

3. ~ 5. (생략)

제4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생략)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3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 5. (생략)

② (생략)

제41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 ③ (생략)

④ 제39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⑥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제4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제19조제2호-----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40조-----

-----.

⑤·⑥ (현행과 같음)

근거법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9. 10. 17.] [법률 제16324호, 2019. 4. 16., 타법개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1. 26.>

③ 삭제 <2019. 11. 26.>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시행일 : 2020. 5. 27.]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시행 2020. 5. 27.] [대통령령 제30608호, 2020. 4. 7., 일부개정]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

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7.>

③ 삭제 <2020. 4. 7.>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⑤ ~ ⑧ (현행과 같음)

[전문개정 2016. 9. 27.] [시행일 : 2020. 5. 27.]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영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영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④ · ⑤ (현행과 같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이 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그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발췌

제35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일시 및 인도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6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이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12 (제224회-의회운영위제1차부록)

사전에 그 활동의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그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의원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의장(의장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해야 한다.

제19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제39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

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와 제13조제2호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